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해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무엇을, 왜 바꾸려 하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박명준 수석전문위원

1. 문제의식: 개정의 취지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경제와 일터의 영역에서 보다 심화 내지
실질화시키기 위하여

촛불혁명의 민심에서 드러난 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질적인 도약과 실질화를 위해서는 경제와 일터의 영역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해대변의 기제가 발전해야 하며, 경제와 일터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기초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로, 이는 기업, 산업, 지역노동시장, 국가의 노동사회복지정책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영역에서 당사자인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 기회의 보편적 증진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공식적인 중앙수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노사협의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공간들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사회적 대화의 보편화 및 실질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기존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명실상부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주도를 통해 구축하는 작업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양극화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가 절실한 가운데, 이를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에 부합키 위하여

한국의 경제사회체제 특히 노동시장은 양극화 내지 이중구조화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대, 성, 지역,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을 중심으로 한 악성 불평등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재생산을 가로막고 후속세대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가로 막는 사회문제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품고 있다. 기존의 조직화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만으로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조직화되지 못한 경제사회주체들이 사회적 대화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주체를 사회적 약자들까지 확대시키고, 이해구도(interest constellation)의 조정을 통해 사회통합의 실질화와 획기적인 불평등 해소를 도모할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에 이른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노동존중사회’의 기본 가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함양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는 일부 경제사회주체들의 판단과 사회적 대화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향한 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나,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틀에서 수행하는 것은 현재 요구되는 시대적 개혁요구를 충분히 담기 힘들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적 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내지 반감을 표출해 왔다.

노사정위원회의 긍정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 속에서 탄생해 기능했다는 이미지가 있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경직되게 그것을 이끌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민주노총이 역설하는 - 이러한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수용할 필요성이 컸다. 무엇보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공식적인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향후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사회적 대화의 권위와 정당성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과: 개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역사적 배경: 기존의 사회적 대화 체제의 성립과 진화

주지하듯이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체제의 성립은 1990년대에 다양한 맹아적 실천들을 통해 개시되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현재까지 핵심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태어나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인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됨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법은 1998년 초 외환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임의로 탄생했던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1999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사정위원회 경과

- ▷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0개항) 체결
- ▷ 1998년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정
- ▷ 1998년 6월 3일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 ▷ 1999년 9월 1일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2004년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55개항) 체결
- ▷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동년 4월 27일 시행)

- ▷ 2007년 4월 27일 제4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항) 체결
- ▷ 2013년 3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시도 (일부법률개정안들 국회제출)
- ▷ 해당 시도의 좌절 후 현재에 이름
- ▷ 2015년 9월 15일 이른바 '9.15 대타협' 사회협약 체결
- ▷ 이후 입법과정의 파행으로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
- ▷ 이후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 회의체는 가동 중단 상태 유지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발족시켜 노사정위원회법의 부분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4월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4기 노사정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노총은 1998년 말에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노사정위원회로의 참가를 거부해 왔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과 탈퇴를 반복하는 등 노사정위원회는 잦은 파행을 겪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노력이 일면서 2013년에 노사정위법의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9.15 대타협'을 통해 사회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이행과정에서의 파행으로 인해 협약은 파기되었고,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를 탈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정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시작:

문재인 정부 출범, 노사정위원회 사무처의 재출범 및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출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과 대통령 당선 후 국정과제로 정립(2017년 상반기)

후보공약에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축을 통하여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명시하였다. 국정과제(63번)에 이를 재차 확인하고 그 실현을 향해 정부는 매진하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2018년에 수립”)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 설계 개시(2017년 하반기)

2017년 8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계의 리더인 문성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사무처를 재구성해 가기 시작했다. 국정과제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대화체제의 새로운 구조화를 모색했다. 2017년 말에 연구용역 발주, 연구회 구성 등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간학제적 연구도 도모하였다.

노사정위원회 사무처(전문위원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을 놓고 점검해야 할 핵심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정리하고,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기본계획을 설계했다.

2017년 말, 8자회담(한국노총), 신8자회담(민주노총) 등을 제시하며 노동계가 나서서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성을 정부와 재계에 제안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 개시(2018년 1월)

2018년 1월 11일 문성현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노총까지 포함하여 6자가 참여하는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공동설계를 최우선에 두고 향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작동해 갈 것을 결의했다. 즉,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회적 대화를 전개해 가는, 임시적이나 사회적 공신력을 갖는 장으로 기능할 것을 출범부터 결의한 것이다.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 중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2018. 1. 31.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기능적 성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자체를 그 안에서 시작하고 전개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담을 내용을 미리 인큐베이트(incubating)해 가는 장으로서의 위상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회의체의 기능을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를 통해 적어도 노사정 핵심주체들은 이미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복원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전개(2018년 2~4월)

1.31 1차 대표자회의 이후 약 50여 일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구성을 놓고 심도 깊은 사회적 대화를 전개(실무위, 운영위, 대표자회의 3층 구조)하였고, 2차(4.3), 3차(4.23) 대표자회의를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심화시켰다.

1차 대표자회의(1.31) 이후 2차 대표자회의(4.3)까지

노사정위원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개편을 위한 논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공유하면서 노사대표단체들은 모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개편안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2월에 노사정위에서 구축한 쟁점안을 놓고 2~3월 2개월간 명칭, 참여주체 확대문제, 의결방식 등에 관하여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합의와 미합의 사항들을 정립하였다. 4.3 2차 대표

자회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하였다.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 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 접근하였다.
-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 '(가칭)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체제를 강화한다.
-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8. 4. 3.

2차 대표자회의(4.3) 이후 3차 대표자회의(4.23)까지

2차 대표자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정립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자신들의 공동의 방안을 마련해 실무협의회를 재개하였다.

특히 각자의 요구사항들을 법률개정안의 형식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고, 4.23 3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하였다.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 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 ①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한다.
-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한다.
 ※ (기존) 10명 → (개선) 18명
 ※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
- ③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④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 (기존) 상임위원 + 노5 + 사5 + 정2 + 공익2 → (개선) 상임위원 + 노2 + 사2 + 정2
- ⑤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기로 하였다.

2018. 4. 23.

3. 핵심 개정사항의 내용과 의미: 무엇을 왜 바꾸려 하나?

기구의 명칭변경: 무엇을 바꾸었나?

(1조 목적)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

왜 바꾸었나?

노사정위원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간의 명칭 변경에는 한국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상 진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당초 노사정위원회는 이른바 삼자주의(tripartism)의 파트너십과 성립에 초점을 두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노사정 삼자간 파트너십을 공고화함과 동시에 2000년 대부터 새롭게 요구되어 온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사회적 대화가 이바지하게 하는 방향성을 명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사회노동위원회와 그 외 다른 5주체가 합의를 본 경제사회위원회의 말하자면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노사정위원회 명칭 유지를 제안하였고,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노총이 제기했던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욱 더 강조하며 ‘노동’이 반드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에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반면 다른 주체들은 노동에 국한되기보다는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의제들을 다루는 기구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지녔었다. 결과적으로 제2차 대표자회의(4.3)에서 두 안을 놓고 논쟁이 전개되다가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이 양자를 통합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을 당시 대표자들 모두가 수용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

유연한 협의기구로서의 위상 확립: 무엇을 바꾸었나?

(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기능 중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삭제

(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익위원 선출방식 관련 기존 순차배제 방식을 없애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 하도록 변경

왜 바꾸었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문제의식은 기구의 제도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절차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에 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법에 존재했던 세밀한 의결과정 및 위원선임절차의 경직된 조항들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합의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충실한 협의(concertation)가 중심이 되어 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의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대화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기구 자체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통찰도 담겨져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의결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며,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2/3 참석, 2/3 동의라고 하는 사실상 전원합의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1/2 참석요건을 보다 더 강화시킨 것으로 협의기구에서 창출한 합의의 사회적 무게와 의미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다.

참여주체의 확대: 무엇을 바꾸었나?

(1조 목적) 기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로 명시된 목적의 주체를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 경제, 사회주체가”로 변경

이후 다양한 조항들에서 노사정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 “경제사회주체”라는 표현 사용

(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기존에 각각 2명씩 두었던 것을 새 법에서는 5명, 5명, 4명으로 도합 8명 늘림. 이로써 총 10인으로 구성되었던 노사정위원회 위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18인으로 대폭 확대

왜 바꾸었나?

“노사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개방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극심한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단지 기존의 시장권력의 삼주체인 노사정의 폐쇄적 논의 틀만이 아니라 약자들까지 대화의 주체로 호명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개혁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제의 확대: 무엇을 바꾸었나?

(1조 목적) “산업평화를 도모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라고 변경

(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협의 사항을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왜 바꾸었나?

노사정위원회가 90년대 후반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갈등인 노사갈등의 해결을 지향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핵심문제인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그 핵심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에 노동의제의 기본중심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넓은 영역으로까지 포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정책 이외에도 복지정책을 언급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사회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정책적 수단이고, 복지정책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정책들임)

노사 중심성의 원칙: 무엇을 바꾸었나?

(2조 참여주체의 책무) 참여주체에게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함

(8조 운영위원회) 기존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10조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 겸직, 신설

왜 바꾸었나?

“독립하여 자율적으로”는 상식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관행에서 일부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이 가미된 것이다. 기존의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그 역할이 미비했던 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활성화는 본위원회에서의 의결 이전에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충실히 도모하려는 것이며, 그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제개발·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이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주적 장의 창출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긍정적 관행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식시켜 노사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전개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면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향: 무엇을 바꾸었나?

(10조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 둘 수 있다 → “둔다” 로 변경

(19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11조 특별위원회1)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근거 신설

(11조 특별위원회2)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언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왜 바꾸었나?

업종별 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약한 규정 하에서 사실상 개최되지 못하였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성찰 하에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둔다”라고 명시한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은 기존의 규정이 “지역노사정협의체”라고 하는 조직구성체의 결성에 초점이 있으면서 사실상 노사관계발전지원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활성화되면서 그 의미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을 성찰하고, 오히려 지역에서의 의미 있는 시도들을 촉발시키고 강화시키는 “실질적 지원”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경제사회위원회가 기능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현안과 관련한 특수한 의제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고 하

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모든 현안을 다 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버겁더라도 구조조정의 원칙 정립을 비롯한 특수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핵심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예방과 해결의 기회를 도모하는 데에 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기여하자는 목적이다.

이른바 ‘계층별 위원회’는 조직화되지 않은 취약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의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그를 매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기회를 향유하자는 취지이다.

계층별 위원회의 경우, 어떠한 원리에 따라 참여주체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꾸려가야 할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노동조합 대표가 추가적인 3인의 노동측 본위원회 참여자의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행할 권한을 부여 받는 바, 초기의 경우 계층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본위원회 참여자는 일치가 될 필요가 있고, 해당 위원장이 중심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계층별 위원회의 참여자 선정과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직된 규정을 미리 정하기보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해당 위원회가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준비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개정의 의의 = 새로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제의 의미

현재 제출되는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통해 구성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과거 노사정위원회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민주적 시장경제가 꽃피는 노동존중의 나라로 전환되어 가는 통로(channel)이자 교각(bridge)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촛불이후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와 양극화 및 불평등체제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소통

및 이해조정 활성화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그간 형식적 제도화에 그쳐 왔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해 내고 명실상부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30년간의 여정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다.

기대효과: 사회적 대화체제의 새로운 목표 구현

이른바 노사정위체제를 과거로 하고, 그 공을 계승하고 과를 극복한 새로운 성격과 지향을 갖는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어, 궁극에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해 간다는 의미다. 포용적 노동체제는 결과로서의 포용성과 과정에서의 포용성 두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로서의 포용성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체제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의 적응이 목표였고, 그 결과 불평등을 초래했다면,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체제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포용성장을 이루는 목표를 암묵적, 명시적으로 지니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포괄성

포용적 노동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사회주체들, 특히 시장의 약자들, 그 중에서도 미조직, 취약노동층을 사회적 대화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를 실현해 갈 것이다.

새로운 균형

궁극에 경제의 영역에서의 민주적 질서를 보다 폭넓게 구현해 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노동관계의 균형적 재정립을 의미한다.

5. 향후 전망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 하에서 이미 시작된 사회적 대화

전술한 대로 1월 31일에 출범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계하는 역할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과도기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1, 2, 3차 회의를 거치면서 대표자회의 스스로 그러한 역할과 위상을 합의해 두고 심화시켜 왔으며,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 시도 및 연구회의 활성화는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5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를 준거로 의제별 위원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 대표자회의 합의문 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18. 1. 31.

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의제별 위원회를 향후 대표자회의 산하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5월에 준비위원회 체제를 거쳐 5월말부터 6월말 사이에 정식 위원회로 발족할 전망이다. (위원회별로 다소 속도의 차이가 있음)

또한 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의제별 위원회뿐 아니라 연구회의 이름으로 일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노사도 참여하는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일종의 '의제배양형' 사회적 대화도 진행 중이다.

〈3차 대표자회의 합의문 중에서〉

의제별 위원회는, ■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한다.

2018. 4. 23.

업종별 위원회의 경우 1차 대표자회의에서 설치를 결의한 이후 그간 노동계로부터 13개 업종에 업종별협의회의 설치신청제안이 들어온 상태이고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3차 대표자회의 합의문 중에서〉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018. 4. 23.

이들 가운데 버스운송, 보건의료, 공공부문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종별협의체의 구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으로부터 2건의 특별위위원회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이 가운데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색 중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위원회도 찬찬히 검토에 돌입하는 중이다.

지역 사회적 대화체제 활성화 강화방안과 미조직 취약층들의 자체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무처가 주도하여 모색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조직, 취약노동층의 상시적인 이해대변과 의제개발의 단위로 가칭 계층별 위원회의 구상을 도모하고 운영방안도 설계 중에 있으며, 대상주체들 및 관련자들과 논의해 가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해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자연스런 역할 이관

내용적으로나 정당성의 측면에서나 현재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이미 상당한 정도 기본적인 위상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서 틀을 짓고 출범한 사회적 대화의 임시적인 구성체는 고스란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틀에 정확히 끼워 맞춰질 수 있을 것이다.

대표자회의의 체제 하에서 이미 시작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는 전면개정안의 입법이 완료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새 집이 완공되어 참여주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보다 큰 힘을 받고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적 기반 심화 및 정교화의 과제

아직 법안에 담지는 않았으나, 시행령을 통해 구현할 사항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일정하게 정립해 둔 사항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사항)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